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입주자 모집공고

■ 대구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은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www.exo-central.com) 및 사전 예약제를 통한 클린 모델하우스로 운영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을 최소화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방문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일정 및 당첨 여부에 따라 관람·방문이 제한되오니, 내방 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과 동반자 1인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가.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나.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다.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전신소독기를 통한 전신소독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클린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조정 등으로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53-471-9991)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주요 개정사항 및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0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외)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대구광역시 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2020.01.03.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거,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제53조 제 9호에 해당되는 소형저가주택인 경우에는 부양자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07.21.)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국토교통부 2020.02.28. 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 확대 요청에 따름)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xo-central.com)에 공개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3월 13일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는 공급금액 6억이상 아파트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니 본 아파트의 일부 세대는 계약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검수 (계약자격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20.07.13 (월)	2020.07.14 (화)	2020.07.15 (수)	2020.07.21 (화)	2020.07.24(금) ~ 2020.07.28(화)	2020.08.03(월) ~ 2020.08.06(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로그인후 조회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방문접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	당사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27)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특별공급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주요내용은 대구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제반법령이 우선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주택과 – 27875호(2020.07.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88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층 6개동 총 630세대(조합원 231세대. 보류지 5세대, 임대 32세대) 중 일반분양 3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35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3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1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0세대 포함]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등급(MMI등급) VII등급이 적용
▣ 입주시기 : 2022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저층 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계		
민영주택	2020000743	01	59.9691A	59A	59.9691	19.4644	79.4335	42.6069	122.0404	32.5316	66	6	6	13	1	26	40	4
	2020000743	02	59.8670C	59C	59.8670	19.8236	79.6906	42.5345	122.2251	32.6433	93	9	10	18	3	40	53	6
	2020000743	03	74.9207A	74A	74.9207	23.2007	98.1214	53.2298	151.3512	40.2363	92	9	9	18	2	38	54	6
	2020000743	04	74.8407B	74B	74.8407	23.4970	98.3377	53.1730	151.5107	40.3055	105	11	11	22	4	48	57	6
	2020000743	05	126.5851	126	126.5851	41.4431	168.0282	89.9366	257.9648	68.7593	3	-	-	-	-	-	3	-
	2020000743	06	138.3519	138	138.3519	45.5080	183.8599	98.2968	282.1567	75.2867	3	-	-	-	-	-	3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팸플릿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타입	공급 세대수	동/호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소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21.02.19	'21.05.20	'21.08.20	'22.01.20	'22.04.20	'22.07.20	입주지정일
59.9691	59A	66	101 1,2호 103동 1,2호	2층	1	140,060,000	201,940,000	-	342,0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102,600,000
				3층	4	142,930,000	206,070,000	-	349,0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104,700,000
				4층	4	145,390,000	209,610,000	-	355,0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5-9층	20	149,070,000	214,930,000	-	364,0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10-19층	33	151,530,000	218,470,000	-	370,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1,000,000
				20-23층	4	153,580,000	221,420,000	-	375,0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59.8670	59C	93	104동 3,4호 105동 1,2호 106동 1,2호	1층	4	135,590,000	195,410,000	-	331,0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300,000
				2층	4	138,860,000	200,140,000	-	339,0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3층	6	141,730,000	204,270,000	-	346,0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103,800,000
				4층	6	144,600,000	208,400,000	-	353,0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105,900,000
				5-9층	29	148,280,000	213,720,000	-	362,0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10-19층	44	150,330,000	216,670,000	-	367,0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110,100,000
74.9207	74A	92	104동 5,6호 105동 4,5호	1층	4	170,180,000	244,820,000	-	415,0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2층	4	174,690,000	251,310,000	-	426,0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3층	4	178,380,000	256,620,000	-	435,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4층	4	181,660,000	261,340,000	-	443,0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5-9층	20	186,170,000	267,830,000	-	454,0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10-19층	10	189,040,000	271,960,000	-	461,0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38,300,000
			102동 1,2호	1층	2	168,540,000	242,460,000	-	411,0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23,300,000
				2층	2	173,050,000	248,950,000	-	422,0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3층	2	176,740,000	254,260,000	-	431,0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4층	2	180,020,000	258,980,000	-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5-9층	10	184,530,000	265,470,000	-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10-19층	20	187,400,000	269,600,000	-	457,0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37,100,000
				20-23층	8	189,040,000	271,960,000	-	461,0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38,300,000
74.8407	74B	105	101동 3,4호 102동 3,4호 103동 3,4호	1층	2	167,230,000	240,770,000	-	408,0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2층	3	171,730,000	247,270,000	-	419,0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125,700,000
				3층	6	175,420,000	252,580,000	-	428,0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4층	6	178,700,000	257,300,000	-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5-9층	30	182,800,000	263,200,000	-	446,0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10-19층	50	185,670,000	267,330,000	-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20-23층	8	187,720,000	270,280,000	-	458,0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37,400,000
126.5851	126	3	104동 5,6호 105동 4호	20-23층	3	327,370,000	472,630,000	47,263,000	80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240,000,000
138.3519	138	3	103동 5호 106동 3,4호	10-19층	3	355,020,000	511,980,000	51,198,000	867,0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260,100,000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약식표기)	59.9691	59.8670	74.9207	74.8407	126.5851	138.3519
약식표기	59A	59C	74A	74B	126	13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전용85㎡이하 주택형(59A/59C/74A/74B)은 부가가치세가 없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가 분양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연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의 대지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없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선납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시행사에 신고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실제 견본주택에는 59A, 74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59C, 74A, 126, 138 주택형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59A	59C	74A	7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1	2	2	2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2	2	7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2	2	7
	장애인		2	2	2	3	9
	중소기업근로자		1	1	1	2	5
	소 계		6	9	9	11	3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	10	9	11	3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0	14	14	17	55
		일반공급(25%)	3	4	4	5	16
	소 계		13	18	18	22	71
노부모 특별공급			1	3	2	4	10
합계			**26**	**40**	**38**	**48**	**15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전체 건설량의 3% 범위)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3.)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경우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 불가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대구광역시</th><th>경상북도</th></tr>
<tr><td>85㎡ 이하</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102㎡ 이하</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135㎡ 이하</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 면적</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tr><th>구분</th><th>신청자격</th><th>당첨자 선정방법</th></tr>
<tr><td>기관추천
특별공급</td><td>•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주택 소유자,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①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②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방부 국군 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중소기업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④ 장애인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 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table>
<tr><th>추천기관</th><th>청약통장 구비여부</th></tr>
<tr><td>장애인(대구광역시 장애인 복지과)
국가유공자(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td><td>청약통장 필요 없음</td></tr>
<tr><td>중소기업 근로자(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기복무제대군인(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td><td>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td></tr>
</table></td><td>•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다자녀가구
특별공급</td><td>•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7.0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태아나 입양자녀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어야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됨)
※ 임신의 경우 청약신청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td><td>•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한 경우 만 해당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7.0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 재혼포함) 기간이 7년이내(전 배우자이였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임신의 경우 청약신청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기본 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양자 및 친양자)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 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일반공급(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등기완료에 한함)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7.0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②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 바람.

※ 주민등록표 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월평균소득 (655,729원)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접수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7.13.(월), 08:00~17:30	• 인터넷 청약(청약 Home) - PC 또는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 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직장 가입자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본)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해당)	* 견본주택에 비치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입주자저축별 예치금액(납입인정금액) 및 가입기간 충족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① 청약예금의 신청 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작은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불필요)
 ②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① 청약예금통장 가입자는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추첨제(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로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층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거주자가 우선함.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최하층이라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 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2순위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면적	신청자격
민영주택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1순위	전용 85㎡이하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일(2018.12.11) 이후 계약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전용 85㎡초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추첨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일(2018.12.11) 이후 계약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2순위	전 주택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 추첨제.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 표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함. 단, 개정일(2018.12.11) 이후 분양권·입주권을 계약한 직계존속(배우자포함)은 가점산정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구분	적용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직계존속이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④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가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나목 부양가족 수 인정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② 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2007.09.0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함.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지 않으니,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경과 다음날 소멸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견본주택 현장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 및 예비입주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인지하시기 바람. • 당첨 사실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조회"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 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①과 ②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일자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공급의 경우 제외)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2조의2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Ⅳ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유의 바람.

■ 일반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 장소
일반공급	1순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20.07.14.(화) / 08:00~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Home앱
	2순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20.07.15.(수) / 08:00~17:30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서 효력 상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Home" 검색)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 청약 신청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 변동이력 및 일자"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일시 : 2020.07.21.(화)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 Home 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07.24(금) ~ 2020.07.28(화) • 시간 : 10:00 ~ 16:00 • 제출 장소 : 견본주택	• 일시 - 2020.08.03.(월)~2020.08.06.(목), 4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27)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7.21.(화) ~ 2020.07.30.(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청약 Home 스마트폰앱 접속 →당첨조회→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7.2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함.

제출기한	• 일시 : 2020.07.24(금) ~ 2020.07.28(화), 10:00~16:00 •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당첨자
제출장소	• 당사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27 / 053-471-9991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여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당첨자의 도장(또는 서명)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경상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노부모특별공급, 일반공급)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특별 공급(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기관추천)		O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 가구		O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O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수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피부양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되고,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O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수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 부양자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신청자(세대주)와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 만 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일반공급(가점제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및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O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VI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일정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8.03.(월) ~ 2020.08.06.(목) 4일간, 10:00 ~ 16:00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27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확인 및 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O		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적격여부 확인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O		계약금 입금 확인증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용)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O	서약서	• 서약서,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1순위 추첨제(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O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부적격 사항 소명확인 통보		O	무주택 소명서류	• 무주택 소명서류('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를 받은자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계약자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O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O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담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

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51-6956-41	동인3의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2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본·지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일정기간을 두고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01010101홍길동' / 103동 1502호 홍길동 → '01031502홍길동')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직접 확인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음.
- 적격대출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던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대출 신청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정부정책 관련 8.2 가계부채관리방안 중도금대출보증 요건 강화로 양 공사(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건수 최대 인당 2건에서 양 공사 통합 세대당 2건으로 축소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2017.08.03일자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월 : 2022년 12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전쟁,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Ⅶ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 품목 상세

구분	적용범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 디딤판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욕실문틀 하부씰
2) 벽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벽지(초배지 포함), 장식벽(벽지, 타일), 발코니벽 도장	콘크리트 벽체 미장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경량벽체
3) 천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천정지(벽지류),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정 도장	천정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정
4) 조명기구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5) 욕실	공용, 부부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사워기, 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액세 서리, 욕실장, 욕실스피커폰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6) 주방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주방액정TV, 3구 가스쿡탑, 음식물탈수기	법적 기본 소방공사, 주방배기덕트, 설비배관, 렌지후드
7) 일반가구	각실, 현관	신발장, 드레스룸 및 장, 파우더장, 반침가구(붙박이장, 시스템선반), 수납선반	
8) 문	각실 출입문	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일체, 문선), 디지털 도어록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현관 방화문, 소방관련 방화문, 포켓도어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람.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분합문(PVC 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시공은 가능하나 타 자재(대리석 등 두께가 상이한 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장 및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쿡탑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으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됨.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는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 품목 신청이 불가함.

(2)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A	59C	74A	74B	126	138
마이너스옵션 금액	12,079,000	14,815,000	14,770,000	14,812,000	28,156,000	28,658,000

Ⅷ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1.02.19	입주지정일
59A	35,000,000	3,500,000	3,500,000	28,000,000
59C	25,000,000	2,500,000	2,500,000	20,000,000
74A	40,000,000	4,000,000	4,000,000	32,000,000
74B	35,000,000	3,500,000	3,500,000	28,000,000
126	60,000,000	6,000,000	6,000,000	48,000,000
138	70,000,000	7,000,000	7,000,000	56,000,000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등의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에 따른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 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51-6956-41	동인3의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2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안방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안방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전체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 또는 부분 확장시는 전체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 아래의 내용은 발코니 확장시 대비 추가되는 옵션 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 비확장 선택시 발코니 확장 대비 마감 및 가구가 하향 조정되며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일부 항목은 평면 구성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계약자와 협의 후 동등으로 조정됩니다.

1) 패키지 상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제조사	모델명 및 재질	59A	59C	74A	74B	126	138
주방패키지		수입주방 가구도어	이탈리아	FAB	19,778,000	20,471,000	21,505,000	19,503,000	38,005,000	38,005,000
		벽, 상판	미존테크	엔지니어드스톤						
		쿡탑	엘리카	니콜라테슬라						
		싱크볼, 수전	콜러	K-5540T-S-NA, 13963T-C4-CP						
		빌트인 밥솥	쿠첸	미작-IN						
욕실인테리어		욕실타일(벽)	아틀라스콩코드	폴리싱	15,917,000	15,917,000	15,917,000	15,917,000	23,276,000	23,276,000
		욕실타일(바닥)	아틀라스콩코드	폴리싱						
		공용욕실 욕조	콜러	스틸에나멜 욕조						
		욕조 에이프론	미존테크	강화대리석						
		세면대	콜러	2215X-0						
		비데 일체형 양변기(공용)	콜러	5401KR-0						
		비데 일체형 양변기(부부)	콜러	5401KR-0						
거실 인테리어	선택1	수입원목 마루(거실, 침실)	마이다스우드	원목마루	23,364,000	19,767,000	26,554,000	24,849,000	31,416,000	38,720,000
		살림쪽착 시스템(59C, 74B 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국내제작	PET						
		전동중문 3연동	키움라인	자동중문						
		거실 감성조명(복도, 거실우물천정)	린노	LYNC						
		거실아트월	아틀라스콩코드	폴리싱						
		거실벽	국내제작	T9 LPM 경면판넬						
	선택2	타일(거실)+수입원목 마루(침실)	아틀라스콩코드+마이다스우드	폴리싱+원목마루	26,224,000	22,297,000	29,920,000	28,215,000	34,562,000	43,439,000
		살림쪽착 시스템(59C, 74B 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국내제작	PET						
		전동중문 3연동	키움라인	자동중문						
		거실 감성조명(복도, 거실우물천정)	린노	LYNC						
		거실아트월	아틀라스콩코드	폴리싱						
		거실벽	국내제작	T9 LPM 경면판넬						
침실 인테리어	74B	침실1,2 디밍 등기구	린노	쥬피터	-	-	-	7,106,000	-	-
		(드레스룸)슬라이딩 도어	국내제작	5T 유리						
		(드레스룸)시스템 가구	국내제작	이동식 선반가구						
		(드레스룸)바닥 수입타일	아틀라스콩코드	폴리싱						
	74B 외	침실1,2 디밍 등기구	린노	쥬피터	2,486,000	2,398,000	2,486,000	-	6,512,000	6,512,000
		드레스룸 조명은경 판넬	국내제작	LED조명						
		여닫이 패턴 유리도어	국내제작	5T 패턴유리						
빌트인 가전가구	59A 수입	빌트인 김치냉장고+김치냉장고장	삼성+이탈리아(도어)	RQ22K5L01EC+FAB(도어)	13,838,000	-	-	-	-	-
		빌트인 오븐 + 오븐장	삼성+이탈리아(도어)	NQ50H5533KS+FAB(도어)						
		빌트인 냉장고	삼성	BRS655140SR						
	59A 국내	빌트인 김치냉장고+김치냉장고장	삼성+국산장	RQ22K5L01EC+국산(도어)	12,089,000	-	-	-	-	-
		빌트인 오븐 + 오븐장	삼성+국산장	NQ50H5533KS+국산(도어)						
		빌트인 냉장고	삼성	BRS655140SR						
	59A 외 수입	빌트인 김치냉장고장+오븐장	이탈리아(도어)	FAB(도어)	-	15,609,000	15,609,000	15,609,000	15,609,000	15,609,000
		빌트인 김치냉장고+오븐	삼성	RQ22K5L01EC, NQ50H5533KS						
		빌트인 냉장고	삼성	BRS655140SR						
	59A 외 국내	빌트인 김치냉장고장+오븐장	국내제작	-	-	12,980,000	12,980,000	12,980,000	12,980,000	12,98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오븐	삼성	RQ22K5L01EC, NQ50H5533KS						
		빌트인 냉장고	삼성	BRS655140SR						

※복층타입(126, 138) 상부층 거실 감성조명 제외됩니다.

2) 붙박이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제조사	재질	59A	59C	74A	74B	126	138
안방 슬라이딩 붙박이장	국내제작	유리	3,036,000	3,036,000	3,553,000	-	4,048,000	4,048,000
침실 붙박이장	국내제작	PET	2,871,000	2,871,000	3,036,000	3,036,000	4,554,000	5,313,000

3)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타입별 설치위치		판매가					
		59A, 59C, 74A, 74B	126 및 138	59A	59C	74A	74B	126	138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2대	거실, 안방	하부층 - 거실, 안방	4,763,000	4,763,000	5,126,000	5,126,000	5,126,000	5,126,000
	3대	거실, 안방, 침실2	하부층 - 거실, 안방, 침실1	6,171,000	6,171,000	6,611,000	6,611,000	6,611,000	6,611,000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하부층 - 거실, 안방, 침실1 상부층 - 거실	7,634,000	7,634,000	8,448,000	8,448,000	8,448,000	8,448,000
	5대		하부층 - 거실, 안방, 침실1 상부층 - 거실, 침실2	-	-	-	-	10,263,000	10,263,000
	6대		하부층 - 거실, 안방, 침실1 상부층 - 거실, 침실2, 침실3	-	-	-	-	12,089,000	12,089,000

-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기 금액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기본 냉매배관 공사비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기본 제공되는 거실(스탠드 형), 안방(벽걸이형)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이 감액되어 반영된 것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총 2개소(거실, 안방)의 냉매배관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타입별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위치한 실외기실은 천장마감이 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위치에 따라 천장형 냉매배관이 발코니 천장 및 벽체에 노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세대내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 문제로 중도금 납부일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 디자인, 크기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선택에 따른 기본 제공되는 가구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 유의사항

- 공급금액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옵션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등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본 아파트 콘셉트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상대업종」에 비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되지 않습니다.(추가 선택품목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항【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하여 소득공제 제외항목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7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5)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별도 선택품목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51-6956-41	동인3의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2

- 납부 시기는 계약 체결 시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납부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 시에는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계약 상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체 시 적용되는 연체료율을 미납 금액에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연체료, 중도금, 잔금 순으로 충당합니다. 이 경우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X 단지 내외부 여건 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변경 승인된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단위세대 치수는 마감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유상옵션 및 발코니 확장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 제공되는 마감재는 별도 마련된 마감재 전시부스에서 필히 확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독점으로 인한 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세대를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기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마감재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가변경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내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변경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유상)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타입별 기본 제공품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드레인, 선홈통, 위생기구, 욕실악세사리,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천장의 몰딩, 세면대 선반 규격, 현관디딤판, 타일 나누기 등 본 공사시 사용성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CCTV는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분양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승인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 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대우산업개발(주)

현장별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 발코니, 창틀, 색채디자인) 디자인를 포함한 단지 내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주진입은 각 동 배면의 주출입구를 이용하여 진입하며,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부 옥외공간의 식재 및 패턴디자인은 추후 시공시 구조적인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서 시선 간섭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 입주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배치계획을 필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서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거나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인접상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 됩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바닥,벽,천장)만 제공되며, 그 외 공사는 제외됩니다.
- 단지 외곽부위에 레벨 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등이 일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층에 설치되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 및 중간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해상도 CCTV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 구성에 따라 장비의 사양이 사업승인시 제출되었던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D·A(드라이에어리어)의 크기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바닥마감은 물 구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승인 조건, 건축심의 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색채,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ELEV HALL 통행로에는 단열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부지는 지하수위가 높은 관계로 영구배수가 설계 및 적용되어 수위 조절을 위한 펌프가 작동하여 일부 소음 및 관리비가 발생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등급(MMI등급) VII등급이 적용됩니다.
- 단지 인접도로(남측 13M, 북측 12M, 서측 15M, 동측 20M)로 인하여 소음, 매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20M도로 인접), 부출입구(15M도로 인접)는 보행자와 차량 진출입구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출입 시 안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북,남측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도로가 이격되어 공공보행통로로 이용되므로, 입주민 외 보행자 통행으로 인한 소음, 통행 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 외 보행자 출입으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통행 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드롭존(어린이차량 승하차)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소음, 냄새,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세대는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실외기가 위치하여 인접한 세대는 실외기 배기로 인한 소음, 냄새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2동 하부 지하1층에 선큰과 연결된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여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5동 배면부에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여 저층부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저층부 및 부대시설 외벽 일부는 석재 및 석재뿜칠로 시공됩니다.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입구 인근에 위치한 세대는 소음, 매연, 시각적 간섭, 눈부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램프 및 지하주차장 높이는 2.4M로 설계되어 일부 택배 및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일부 대지경계선 내에 인접도로 레벨차이로 인하여 디자인된 석축 또는 옹벽이 시공되며 이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주진입은 필로티에 있는 주출입구를 이용하여 진입하며, 인접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천장에는 우.오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통로는 6.0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메인통로는 6.5M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1층 주차장 내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차량으로 인한 통로 방해, 매연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도어의 손끼임방지 의무화로 거실에 면한 도어에 시공되며, 본 공사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세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모형, 공급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대칭형 타입의 경우, 분양 홍보물의 일부 각 실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 설치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분전반은 침실 또는 현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벽체에 노출되며,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강화대리석, 강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장롱, 붙박이장류)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기타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 높이 차이, 전기용량 차이, 크기 등으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대현관 및 대피공간 방화문은 본 공사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석은 석재의 특성상 디딤 폭, 무늬, 색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악세서리 위치는 각 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 후 체결바랍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 됩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악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세탁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환기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내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뒤틀림·변형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욕조, 샤워부스, 주방가구, 화장대 등 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제외됩니다.
- 세대 내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국내 생산되는 석고보드는 재생펄프를 사용하여 제작되며, 재생펄프로 사용되는 종이중 컬러 인쇄된 종이가 섞여들어가 희석되지 않은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료가 벽제에 베어나올 수 있으며 이는 시공 및 제품의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바닥은 물 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계획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관련 없으며, 문 개폐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 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문짝모서리 상,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욕실 내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 내 천장에는 윗층세대의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입면)에 환기 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거실(스탠딩)과 안방(벽걸이)에 기본으로 매립되어 설치됩니다(단, 추가품목 항목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설치되지 않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공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씽크대 하부 및 욕실 거울 뒷면은 마감이 별도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용도가 아닌 세대 발코니 및 공용시설, 부속시설에는 별도의 단열규정이 없어 온도차에 의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지관리 부분으로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각 세대의 전자제품 또는 별도 시설설치 등에 의한 구조개선은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지급되는 품목들(주방가구 액세서리등)은 세대별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장 시 제공되는 기본제공 마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관 : 천장(시공: 실크벽지), 바닥(시공: 유럽산 타일), 디딤판(시공: 엔지니어드 스톤), 가구(시공: 국내 제작가구)
 - 거실 : 천장(시공: 실크벽지), 벽(시공: 실크벽지), 바닥(시공: 강마루), 아트월(시공: 중국산 폴리싱타일)
 - 주방 : 천장(시공: 실크벽지), 벽(시공: 실크벽지), 가구(시공: 국내 제작가구), 가구상판(시공: 인조대리석(MMA)), 가구벽(시공: 국내산 타일), 설치가전기기(시공: 국산 렌지후드, 3구 가스쿡탑, 복합오븐, 음식물 탈수기)
 - 욕실1,2 : 천장(시공: ABS소재), 벽(시공: 국내산 자기질타일), 바닥(시공: 국내산 도기질타일), 세면대/양변기/수전(시공: 국산OEM), 욕조(시공: 아크릴욕조)

■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승인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

- 본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승인변경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X 기타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계획 등은 관할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면적분할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오차면적은 준공시 특정세대에 합산하여 등기 시 등재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비치구조, 단지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축 및 보강토블럭 등)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지분면적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기타공용면적(주민공동시설, 기계실 및 전기실, 주차장 등)은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주변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행·시공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각종 홍보물 및 모형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공원,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기타 공공시설 등)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고 또한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인쇄물, 분양 홈페이지 등에 사용 및 제시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으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수입품인 경우 양질의 대체제품이 있을 경우, 신제품이 개발되었을 경우에 유사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기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실제 시공된 마감자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및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카달로그 및 모형의 충분한 숙지 및 분양상담을 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홈페이지상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상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취소, 계약 체결 불가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됩니다.(계약 체결 후 발견 시 계약 취소)
- 사전(입주)예약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감정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자는 청약업무 처리가능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중도금을 한번이라도 납부한 후에는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및 입주 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새시,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당첨 및 분양계약 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당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
- 잔금을 완납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추가선택품목(별매품)이 있는 경우, 추가선택품목(별매품) 금액도 완납하여야 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 부정입주를 통한 상행위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영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 일임됩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고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급대금 정산 등을 요구할 수 없음(또한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를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의 모습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공사 과정 중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

드시 견본주택 방문,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방문,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동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릿,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비조정대상에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이후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함. (추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017년 1월 20일부터 체결하는 최초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 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동인초 배치 가능, 중학생은 1학교군에 분산배치 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내 분산배치 가능합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 053-231-0705)

X 기타 주요 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의무사항 적용 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하며, 절수기기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24,880,000	
전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374,752,100	
소방·정보통신	㈜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528,000,000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본 부지 내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임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105,644,000,000	제01222020-101-0001900호

※ 본 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분양보증 약관 (보증사고, 보증채무의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적용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동인3의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6길 90(순풍빌딩 2층)	170171-0020979
시공사	대우산업개발(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6층 601호	120111-0592924

▣ **홈페이지 주소 :** www.exo-central.com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27

▣ **분양문의 : ☎ 053-471-999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